##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994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김경만・송재호・송갑석

김진표 · 양향자 · 이학영

임종성 · 이성만 · 박홍근

황운하 • 민형배 • 허종식

서영석 • 민병덕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8월 현재 노란우산 공제 재적가입자 151만명, 부금조성액이 1 7조원에 달함에 따라 경영상담, 교육, 문화, 건강,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노란우산이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가 장기적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 가능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제3호 및 제4호). 법률 제 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u>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u>
	한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